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18시 40분

목차

목차 2
등록현황 3
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3

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

2014.04.17 조회수 576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4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제44조(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)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·담장· 대문의 양식·구조·형태·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목록

이전글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3

다음글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5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